

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2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5. 4.
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관계 법령에 맞게 인용법령과 용어를 정비함(안 제26조의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 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 · 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2007. 4. 6 ~ 4. 16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각 호외의 부분, 제24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, 제3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, 제31조제3항 및 제43조 각 호외의 부분중 “각호의 1”을 각각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24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“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(이하 “용역사업 등”이라 한다)”를 “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”로, “용역사업 등이”를 “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가”로 한다.

제24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,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 중 “구청장”을 각각 “자치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24조의3제4항제1호중 “용역사업 등”을 “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”로 한다.

제2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· 상업지역 · 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) 지점에서 200m 이내의 지역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,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) 지점에서 500m 이내의 지역

제26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항의 규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당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.

제명 “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”를 “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문화재보호법”을 “「문화재보호법」”으로 한다.

제14조 및 제24조의3제6항중 “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각각

“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제24조의2(문화재수리용역 시공의 평가 등) ①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(이하 “용역사업 등”이라 한다)를 발주한 시장 또는 고청장(이하 “발주청”이라 한다)은 당해 용역사업 등이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제24조의3(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1.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의 평가대상이 되는 용역사업 등의 선정 및 평가</p> <p>2. (생략)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	<p>제10조(위원의 해촉) - - - - -</p> <p>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 - - - -</p> <p>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의2(문화재수리용역 시공의 평가 등) ①- - - - - - - - -</p> <p>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/p> <p>- -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- - - - - - -</p> <p>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자</p> <p>치구청장 - - - - - - - - -</p> <p>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가 - - 각 호의 어느 하나- - 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의3(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/p> <p>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/p> <p>-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문화재수리공사 - - - - 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의2(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도시계획구역중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) 지점에서 200m 이내의 지역</p> <p>2. 도시계획구역중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) 지점에서 500미터 이내의 지역 제3항의 규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그 건설공사가 당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.</p>	<p>제26조의2(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) 지점에서 200m 이내의 지역</p> <p>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,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(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) 지점에서 500m 이내의 지역</p>

현 행	개 정 안
<u><신설></u>	<p>④ 제3항의 규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당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.</p>
제31조(전수장학생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2. (생략) ③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. ④ ~ ⑤ (생략)	<p>제31조(전수장학생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 - - - - 각 호의 어느 하나 -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③ - - - - - 각 호의 어느 하나 - 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제33조(보조금) ① ~ ② (생략) ③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구청장을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, 사용하도록 한다.	<p>제33조(보조금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 - - - - - - - - - 자치구청장 - - - - - - - - - - -</p>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이의신청) ①시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② ~ ③ (생략)	제42조(이의신청) ① - - - - - 자치구청장 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43조(표창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	제43조(표창) - - - - 각 호의 어느 하나 - - - - - - - - - - - - - - 1. ~ 4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36조 (용도지역의 지정)

-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1. 도시지역 :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
- 가. 주거지역 :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
 - 나. 상업지역 :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
 - 다. 공업지역 :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
 - 라. 녹지지역 : 자연환경·농지 및 산림의 보호, 보건위생,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